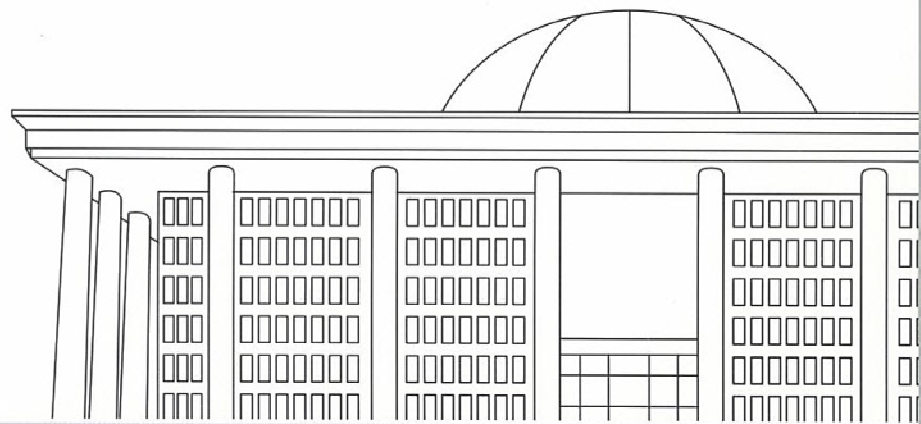


방과후학교사업 평가

-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9. 11



발간등록번호 31-9700330-000706-14

방과후학교사업 평가

—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2009. 11.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규교육기능 보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및 교과보충 강좌를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사업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 전체 초·중·고생의 52.8%가 참여하고 있고, 매년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약 6,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등 시행된 지 4년 만에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사업은 양적으로 큰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연 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 모두 방과후학교사업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양적 확대 자체를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은 제대로 정착되고 수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과 부실한 공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평가시스템을 비롯한 제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방과후학교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성과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요 약

I. 서론

- 방과후학교사업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규교육기능 보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정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등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2006년에 ‘방과후 학교’로 통합하였음.
 - 2008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중 99.9%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고교생의 52.8%가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여하고 있음.
 - 2008년 동 사업에 투입된 국가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시도교육청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총 3,337억 5,400만원이었음.
-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방과후학교사업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 정규교육 보완 효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달성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사업집행 및 규모 확대에 치중하여 성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업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음.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과후학교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목표 달성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수행된 바 없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방과후학교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 사업대상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계획, 집행 및 성과관리의 각 단계별로 평가를 수행하였음.

Ⅱ. 방과후학교사업 현황

- 2008년 10월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교의 99.9%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에 총 751만명의 초·중·고교생 중 396만명이 참여하여 52.8%의 참여율을 보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학생수	3,645,786	1,691,033	46.4	2,026,657	919,226	45.4	1,834,128	1,349,766	73.6	7,506,571	3,960,025	5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10월 기준 통계자료

- 방과후학교사업은 초등보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됨.
-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방과후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등 가정형편상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읍·면지역 및 도농복합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임.
- 2008년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금 등 총 3,337억 5,400만원의 국가 재정이 방과후학교사업에 투입됨.

Ⅲ. 평가 및 정책 제언

1. 국가적 차원의 방과후학교사업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방과후학교사업은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책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엄밀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내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큼.
- 그러나 2008년 동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교부, 통계현황 취합 및 만족도 설문조사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청은 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에 매진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와 같은 지원학생 수, 참여율, 사업예산 등과 같은 투입·산출지표에 대한 통계조사 및 단순한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 보완, 지역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을 방과후학교사업의 정책목표를 제시하였으므로, 각 목표별로 엄밀한 성과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국회 및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에 방과후학교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별, 주요사업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사업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성과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책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체계적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과후학교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과후학교사업은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사업이기에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될 경우, 교과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 사업 관련 주체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이 일관되지 못한 방식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음.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동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재정지원 구조 합리화를 통한 방과후학교사업 내실화

- 방과후학교의 주요사업 중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 예산, 부동산교부세,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단위사업별 재정지원 방식

세부사업명	재정지원 방식
초등보육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예산 + 시군 부동산교부세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시도교육청 예산 + 시군 대응투자

- 첫째, 기초자치단체가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주요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되나,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지원은 지역의 사업수요 및 성과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로 지원액의 격차가 크며,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해 매년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바,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원구조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관련법령 정비 시 적절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방과후학교사업 추진성과에 근거한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재정 효율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사업의 질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과 시군의 대응투자로 마련되나 지자체가 대응투자하는 예산 비율이 지역별로 매우 상이함.

- 사업수요 대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사업에 재정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여 해당 지역의 방과후학교사업이 부실해지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 사업수요 대비 대응투자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대응투자가 미흡한 원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농산어촌 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비 산정 기준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초·중등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통해 교부함.

-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측정산식을 통해 계산됨.

방과후학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측정항목	산정공식
농산어촌 지원	$\Sigma \text{학급 수} \times \text{전년도 학급당 평균 방과후학교 지원액(A)}^{1)}$

주: A=(시도교육청 예산 + 지자체 예산)/학급 수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당해연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산정 공식에서 학급당 평균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다음연도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임.
 - 현실적인 사업수요와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비 확보 규모에 따라 다음연도 교부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5. 사업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식 마련 필요

-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83% 이상이 18시 이전에 운영 종료하고 방학기간, 학교별 재량휴업일, 토요일휴업일 등에 운영되는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규모가 부족하여 보육부담 경감 대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함.
 - 맞벌이 부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보육교실 수를 확대하며, 운영 범위에 학교재량 휴업일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과후학교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동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증가함.

-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고 학교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가 매우 중요하나,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임.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통학버스 등 농산어촌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거점학교로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역별 방과후학교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상이하여 지역별로 교원의 참여동기 유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는 방과후학교 보직교사를 통해 참여 교원의 업무 및 책임 가중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사업 수행 초기부터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별 도입 격차가 크고, 도입되지 않은 학교가 많음.
- 방과후학교 보직교사 운영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지역별 방과후학교사업의 내용 및 활성화 정도, 성과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보직교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6. 유사사업간 연계 강화로 추진체계의 합리성 제고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호·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부처간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범사업을 각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큼.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시범사업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

업(특별교부금 20억원)을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사업 예산 1억 8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한 상황임(2009년 10월 현재).

- 유사사업간 연계·조정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문제의식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담당자, 현장의 사업담당자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 요약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계획	추진근거의 명확성	사업의 법적근거가 관련법령 상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가? ↳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음.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	재정지원방식은 효율적이며 안정적인가? ↳ 주요사업인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 지원 및 초등보육 프로그램별 재원이 상이하고 재정지원방식이 복잡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방과후학교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별 재정여건 및 지역내 방과후학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방과후학교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예산 확보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폭, 지역간 격차 발생이 우려됨. ↳ 농산어촌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여건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동 사업에 대응투자하는 예산 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함. 교육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응투자가 저조하여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사업비(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은 적절한가?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연도 학급당 평균 지원액이 감소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 업 집 행	사업 집행의 효율성	사업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가? ↳ 초등보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대책으로는 미흡함. 2008년도 하반기 현황을 보면,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86% 이상이 18시 이전에 운영 종료하였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학교사업의 경우 학생의 안전귀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 학생들의 귀가 거리가 길고 학교간 이동이 어려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이후 안전 귀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음. 방과후학교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절히 주어지고 있는가? ↳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한 교원에게 평가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보직교사가 도입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추진체계의 합리성	유사사업간 적절한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유사한 방과후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련 부처간 적절한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각 부처에서 각각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음.
성 과 관 리	성과관리의 적정성	엄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업관련 통계자료 취합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과 같은 동 사업의 정책 목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사업을 2008년에 지방이양한 이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강좌 수 증가율과 같은 투입지표 위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목 차

요 약 / v

I. 서 론 / 1

- 1. 평가의 필요성 1
-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

II. 방과후학교사업 현황 / 5

- 1. 방과후학교사업의 개요 5
- 2. 방과후학교사업의 현황 6
 - 가. 방과후학교사업 총괄 현황 7
 - 나. 방과후학교 주요 사업 현황 12
- 3. 방과후학교사업의 추진체계 20
- 4. 방과후학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 21
 - 가. 재정지원 방식 21
 - 나. 시도교육청별 재정투입 현황 23

III.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27

- 1. 사업계획 평가 및 정책 제언 27
 - 가. 방과후학교사업의 법제화 27
 - 나. 방과후학교사업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29
 - 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합리화 37
- 2. 사업집행 평가 및 정책 제언 40
 - 가. 초등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40
 - 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귀가 지원 42

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사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	44
라. 방과후학교 참여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48
3. 성과관리 평가 및 정책 제언	50
가. 국가수준의 방과후학교사업 성과분석시스템 구축	50
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강화	52

IV. 요약 및 결론 / 55

참고문헌 / 59

[부표 1] 방과후학교사업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액 및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액 / 60
[부표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 61
[부표 3] 경상남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 63
[부표 4] 경기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 64
[부표 5]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현황 / 65
[부표 6]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 현황 / 66
[부표 7] 2009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사업대상 선정 현황 / 67

표 차례

[표 1] 평가기준	4
[표 2] 방과후학교사업의 연혁	5
[표 3] 방과후학교 정책목표	6
[표 4] 방과후학교사업 참여 학교 현황(2008년도)	7
[표 5] 방과후학교사업 참여 학생 현황(2008년도)	8
[표 6] 방과후학교사업 학생 1인당 참여 현황(2008년도)	9
[표 7]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사업 강좌 유형별 현황(2008년도)	11
[표 8] 강사 유형별 특기적성 강좌 현황(2008년도)	12
[표 9] 지역별 방과후학교 주요사업별 예산 및 참여 인원 현황(2008년도)	13
[표 10]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2008년도)	15
[표 11]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2008년도)	16
[표 12] 학생 유형별 참여 학생 수(2008년도)	16
[표 1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현황(2008년도)	17
[표 1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참여 학교 및 학생 현황(2008년도)	19
[표 15] 방과후학교사업 재정지원 총괄 현황	22
[표 16] 방과후학교사업 지역별 예산결산 현황	24
[표 17] 방과후학교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26
[표 18]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8
[표 19] 단위사업별 재정지원 방식	29
[표 20] 부동산교부세 중 보육·교육지원 교부세 교부 및 투자 현황(2008년도) ..	31
[표 21] 지역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2008년도)	34

[표 22] 전라북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2008년도)	36
[표 23] 방과후학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38
[표 2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현황	39
[표 25]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현황	40
[표 26]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 현황	41
[표 27]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생 귀가지원 사례	43
[표 28] 방과후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사업 현황	44
[표 29]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부처별 사업 현황	46
[표 30]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47
[표 31] 방과후학교 보직교사 배치학교 비율	49
[표 32]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사업 성과지표 현황	53
[표 33]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방과후학교사업 평가기준 현황	54

그림 차례

[그림 1] 평가의 범위	3
[그림 2]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사업 강좌 유형별 비중(2008년도)	11
[그림 3] 방과후학교사업 추진체계	20
[그림 4]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현황	41

I. 서론

1. 평가의 필요성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기능 보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방과후학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99.9%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전체 학생의 52.8%가 참여하고 있을 만큼 동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¹⁾ 방과후학교사업에 투입된 전체 국가 재정은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이 확대되고 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아동·청소년 지원대책의 주요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절감, 정규교육 보완 및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방과후학교사업의 가치와 방향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동 사업이 사교육을 대체할 정도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같은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학생 가구의 사교육비 수준 추이, 지역별·소득수준별 사업 참여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 효과 등과 같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와 직결된 평가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방과후학교사업의 집행 및 사업규모 확대에 치중하여 사업목표 달성도, 국가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였다.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동 사업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중앙정부

1) 2008년 10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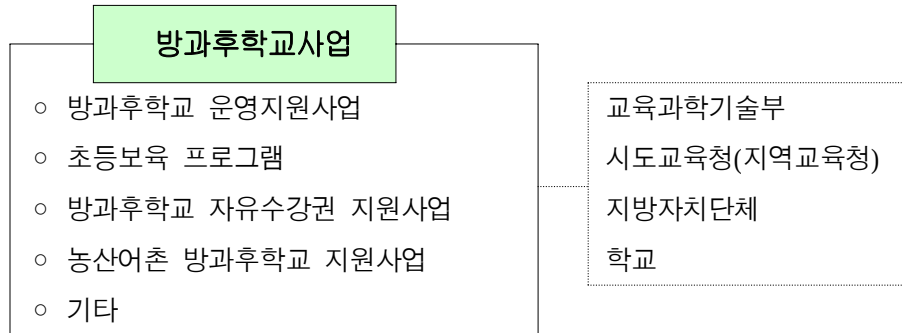
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후 시도교육청 사업예산 교부 및 반기별 통계자료 취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청은 사업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매진하는 상황이어서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과후학교사업이 수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및 성과평가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성과자료의 부재, 성과분석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사업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개별 학교가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의 방과후학교사업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사업은 단일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개별적인 사업들을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2006년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이후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점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사업 운영 전반 및 주요사업인 초등보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1] 평가의 범위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되지 않고, 정기적인 성과평가가 엄밀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여건으로 인해 본 보고서는 평가의 범위를 사업 추진방식과 집행 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동 사업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성과는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된 시점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평가는 [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성과관리의 각 단계에서 해당되는 문제점 위주로 수행되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와 사업의 재원조달방식이 사업수행에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 이양된 이후 동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별 재정여건 및 자치단체 장의 의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방과후학교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지역별로 고르게 구축되어 있는지, 유사한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의 적절한 연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

는지, 사업목표별로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성과정보가 축적·공개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 평가기준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계획	추진 근거의 명확성	-사업의 법적근거가 관련법령 상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	-재정지원방식은 효율적이며 안정적인가?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방과후학교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업 집행	사업 집행의 효율성	-사업이 계획대로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사업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가?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의 안전귀가를 위한 조치가 수행되고 있는가? -방과후학교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절히 주어지고 있는가?
	추진체계의 합리성	-유사사업과의 연계·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간 협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과 관리	성과관리의 적정성	-국가적 차원의 성과평가시스템이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가? -성과평가 결과가 국회 및 일반국민에게 적절히 공개되고 있으며, 환류되고 있는가?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본 평가는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방과후학교사업 통계 자료(2008년도 10월 기준) 및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자료, 시도교육청의 2009년도 방과후학교 사업계획서, 학술논문·연구보고서 등 관련 문헌, 유관기관 업무협의(교육과학기술부,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등),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II. 방과후학교사업 현황

1. 방과후학교사업의 개요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이다.²⁾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방과후)에 학교에서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사업이다.³⁾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사업은 2005년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부터는 자율화 기조에 따라 방과후학교사업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지방이양되어 각 지역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99%의 초·중등학교가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2008년 10월 기준).

[표 2] 방과후학교사업의 연혁

연도	199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내용	· 특기적성 교육 등 학과후 교육활동 운영	· 수준별 보충학습 · 특기적성 · 방과후 보육교실	· 방과후 학교 시범도입 · 초·중고 48개교	· 방과후학교 전국적 확대추진 · 자율성·다양성· 개방성이 확대된 교육체제로서의 방과후학교 도입		· 자율화 및 지방이양 · 방과후학교 사업지방이양 · 단위학교 자율 운영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2008. 12에서 재정리.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3)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학교에서 수행한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임.

정부는 방과후학교사업의 비전을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로 설정하고, 학교의 정규교육 보완,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표 3] 참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을 각 지역에 교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사업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방과후학교 정책목표

정책 목표	주 요 내 용
학교 정규교육 기능 보완	특기·적성교육, 교과 수준별 보충심화 학습 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실현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교육비 경감	보육 등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자료 : 국무총리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2008. 7.

2. 방과후학교사업의 현황

방과후학교사업은 지역별·단위학교별로 자율화되어 주요사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사업수행 내용은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단위학교의 사업 수행 의지 및 지역 교육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10월에 조사한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의 전국적인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세부사업보다는 전국적인 현황 및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가. 방과후학교사업 총괄 현황

(1) 사업참여 현황

전국적인 방과후학교사업 참여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99.9%의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827개교 중 5,823개교로 99.9%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중학교가 3,086개교 중 3,081개교로 99.8%를, 고등학교(일반계고 및 기타계열 포함)는 2,201개교 중 2,194개교로 99.7%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표 4] 방과후학교사업 참여 학교 현황(2008년도)

(단위: 학교 수, %)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비율
서울	578	577	99.8	374	374	100.0	305	301	98.7	1,257	1,252	99.6
부산	292	292	100.0	170	170	100.0	150	150	100.0	612	612	100.0
대구	213	213	100.0	122	122	100.0	89	89	100.0	424	424	100.0
인천	231	231	100.0	123	123	100.0	115	115	100.0	469	469	100.0
광주	140	140	100.0	82	82	100.0	62	62	100.0	284	284	100.0
대전	138	138	100.0	86	86	100.0	60	59	98.3	284	283	99.6
울산	116	116	100.0	60	60	100.0	48	48	100.0	224	224	100.0
경기	1,100	1,098	99.8	547	542	99.1	380	378	99.5	2,027	2,018	99.6
강원	361	361	100.0	164	164	100.0	114	114	100.0	639	639	100.0
충북	257	256	99.6	128	128	100.0	82	82	100.0	467	466	99.8
충남	430	430	100.0	191	191	100.0	109	109	100.0	730	730	100.0
전북	421	421	100.0	204	204	100.0	130	130	100.0	755	755	100.0
전남	450	450	100.0	251	251	100.0	153	153	100.0	854	854	100.0
경북	496	496	100.0	281	281	100.0	194	194	100.0	971	971	100.0
경남	498	498	100.0	261	261	100.0	180	180	100.0	939	939	100.0
제주	106	106	100.0	42	42	100.0	30	30	100.0	178	178	100.0
계	5,827	5,823	99.9	3,086	3,081	99.8	2,201	2,194	99.7	11,114	11,098	99.9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강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참여 학생이 부담하고 있다.⁴⁾ [표 5]와 같이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7,506,571명의 초·중·고교생 중 3,960,025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52.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초등학교가 46.4%, 중학교가 45.4%, 고등학교(일반계고 및 기타계열 포함) 학생이 73.6%의 참여율을 보여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방과후학교사업 참여 학생 현황(2008년도)

(단위: 명, %)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서울	619,141	254,598	41.1	360,252	93,307	25.9	351,277	146,015	41.6	1,330,670	493,920	37.1
부산	227,907	157,543	69.1	137,531	71,421	51.9	136,349	115,858	85.0	501,787	344,822	68.7
대구	187,173	79,049	42.2	111,407	54,752	49.1	106,310	87,607	82.4	404,890	221,408	54.7
인천	204,531	96,180	47.0	118,163	77,786	65.8	111,412	95,871	86.1	434,106	269,837	62.2
광주	127,656	66,909	52.4	71,543	38,872	54.3	63,242	51,867	82.0	262,441	157,648	60.1
대전	120,063	50,213	41.8	67,396	37,682	55.9	61,587	49,145	79.8	249,046	137,040	55.0
울산	94,146	46,673	49.6	54,185	25,525	47.1	49,666	40,741	82.0	197,997	112,939	57.0
경기	919,274	321,028	34.9	491,583	126,940	25.8	396,105	281,000	70.9	1,806,962	728,968	40.3
강원	110,262	66,250	60.1	58,883	40,723	69.2	54,708	43,706	79.9	223,853	150,679	67.3
충북	117,261	62,251	53.1	64,042	45,810	71.5	57,671	49,653	86.1	238,974	157,714	66.0
충남	150,521	105,097	69.8	78,182	59,240	75.8	68,618	59,443	86.6	297,321	223,780	75.3
전북	141,824	91,564	64.6	78,526	49,854	63.5	72,218	60,828	84.2	292,568	202,246	69.1
전남	140,140	76,127	54.3	75,067	45,182	60.2	66,766	57,457	86.1	281,973	178,766	63.4
경북	184,705	86,347	46.7	99,426	80,460	80.9	95,683	85,900	89.8	379,814	252,707	66.5
경남	253,005	108,151	42.7	135,108	58,407	43.2	120,694	109,341	90.6	508,807	275,899	54.2
제주	48,177	23,053	47.9	25,363	13,265	52.3	21,822	15,334	70.3	95,362	51,652	54.2
계	3,645,786	1,691,033	46.4	2,026,657	919,226	45.4	1,834,128	1,349,766	73.6	7,506,571	3,960,025	52.8

주 1. 참여 학생 수는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를 나타냄
(예를 들어, 한 학생이 3개의 강좌에 참여하는 경우, 3명이 아닌 1명으로 셈함).

2.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 4) 단,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여 무상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2) 학생 1인당 참여 현황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연간 평균적으로 수강하는 강좌 수 및 월 수강료 부담액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생 1인당 수강하는 평균 방과후 학교 강좌는 2.1개이며, 학생 1인이 1강좌 당 월평균 부담하는 평균 금액은 26,916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방과후학교사업 학생 1인당 참여 현황(2008년도)

(단위: 강좌 수, 원)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강좌 수	월 부담액	강좌 수	월 부담액	강좌 수	월 부담액	강좌 수	월 부담액
서울	1.2	50,437	1.3	28,018	1.8	30,759	1.4	41,043
부산	1.2	25,460	1.1	24,900	3.6	32,259	2.0	28,447
대구	1.0	28,713	1.1	24,946	6.4	33,531	3.2	29,766
인천	1.3	22,151	1.6	19,096	4.2	21,425	2.4	20,907
광주	1.1	29,537	1.2	25,256	7.2	32,608	3.1	29,675
대전	1.3	31,746	1.1	21,512	5.9	33,358	2.9	29,892
울산	1.5	29,080	1.2	26,938	1.8	31,625	1.5	29,612
경기	1.3	25,917	1.2	20,382	2.6	24,959	1.8	24,695
강원	1.2	26,019	3.3	13,975	5.7	42,269	3.1	30,352
충북	1.6	24,088	2.5	11,993	5.2	26,747	3.0	21,627
충남	1.3	24,656	1.8	18,013	3.1	16,363	1.9	19,568
전북	1.4	20,584	1.3	19,145	2.7	30,301	1.8	24,194
전남	1.3	25,243	1.5	2,476	3.5	31,745	2.1	18,465
경북	1.5	24,964	1.7	18,064	2.6	25,536	1.9	23,553
경남	1.3	16,433	1.3	14,348	4.1	21,631	2.4	18,022
제주	1.5	22,805	6.0	15,158	2.3	27,950	2.9	22,450
계	1.3	29,447	1.6	19,402	3.6	28,081	2.1	26,916

주 1. 학생 1인당 월 부담액은 학생 개개인이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납부한 수강료를 합산한 총액을 총 참여학생 수로 나누어 도출하였음.

2.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1인당 수강 강좌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3개로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으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중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1인당 수강강좌 수가 1.1개~6.0개, 고등학교의 경우 1.8개~7.2개로 편차가 크다. 1인당 월 부담액은 경상남도가 18,022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시가 41,043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및 강사 현황

방과후학교사업의 강좌는 교과 강좌와 특기적성 강좌로 구분된다. 교과 강좌는 학업성취도 신장을 위하여 교과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하여 지도하는 강좌로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과정 관련 강좌이다. 특기적성 강좌는 교과 강좌 이외의 강좌로서,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강좌이다. 특기적성 강좌에는 진로지도, 취미·여가생활, 흥미·탐구력·사고력·창의성 신장과 관련된 강좌 등이 있다.

학교급별로는 [표 7] 및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강좌는 10.1%, 특기적성 강좌는 89.9%로 나타나 방과후학교가 대부분 특기적성 강좌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학교로 올라갈수록 특기적성 강좌와 교과과정 강좌의 비중이 역전되어, 중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강좌가 37.3%, 교과과정 강좌가 62.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교과과정 강좌가 87%에 달해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활동이 대학 입시에 대비한 교과과정 보충학습 등 교과과정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사업 강좌 유형별 현황(200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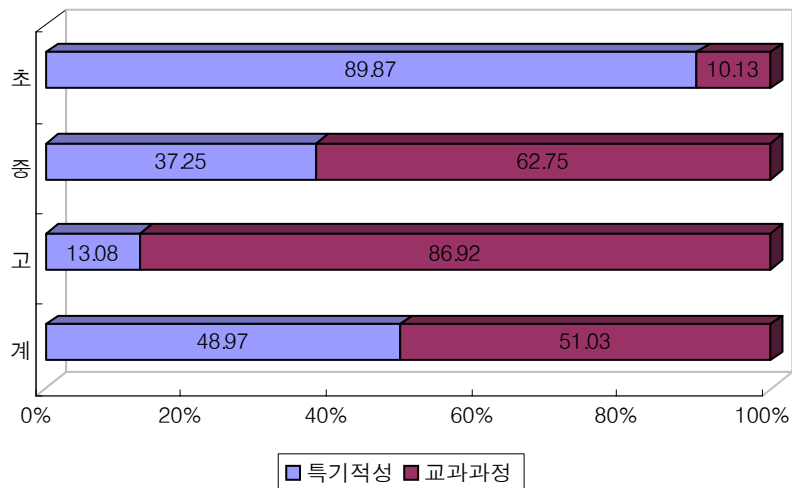
(단위: 강좌 수,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강좌 유형	특기 적성	교과	계	특기 적성	교과	계	특기 적성	교과	계	특기 적성	교과	총계
강좌 수	81,435	9,184	90,619	20,179	33,993	54,172	11,191	74,357	85,548	112,805	117,534	230,339
(비중)	(89.9)	(10.1)	(100.0)	(37.3)	(62.7)	(100.0)	(13.1)	(86.9)	(100.0)	(49.0)	(51.0)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그림 2]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사업 강좌 유형별 비중(2008년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는 크게 현직교사와 외부강사로 나뉘는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한 강사는 총 18만 6,448명이다. 이중 현직교사가 전체의 65%인 12만 1,469명이며, 외부강사가 35%인 6만 4,979명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 강좌의 경우 외부강사의 비중이 67.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 강좌의 경우 현직교사가 전체

교과 강좌 교사의 92.3%로 나타나 교과 강좌의 경우 현직 교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강사 유형별 특기적성 강좌 현황(2008년도)

(단위: 명, %)

구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특기적성 강좌	27,640	(32.6)	57,169	(67.4)	84,809 (100)
교과 강좌	93,829	(92.3)	7,810	(7.7)	101,639 (100)
전체	121,469	(65.1)	64,979	(34.9)	186,448 (1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 체결된 계약에 의해 활동하게 되며, 강사료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강의시간 및 학생 수 등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방과후학교 주요 사업 현황

(1) 주요사업별 총괄 현황

방과후학교사업 중 시도교육청 평가⁵⁾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조사 시 현황자료가 관리되는 3가지 주요사업은 초등보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다. 3가지 주요 사업의 2008년도 예산 및 참여 인원 수 현황은 [표 9]와 같다.

초등보육 프로그램 지원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방과후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

5)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시도교육청 평가 체제가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부분은 학생 참여율 등의 정량평가, 만족도 등의 정성평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등으로 평가될 예정이라고 함.

총 교육청 편성 예산은 447억원, 참여 인원은 5만 4,638명이었다. 예산 및 참여 인원 면에서 가장 사업규모가 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등 가정형편상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2008년도 교육청 예산은 1,008억원, 참여 학생은 총 326만 4천명이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읍면지역 및 도농복합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총 예산은 623억원이었으며, 참여 학생은 74만 4천명이었다.

[표 9] 지역별 방과후학교 주요사업별 예산 및 참여 인원 현황(2008년도)

(단위: 천원, 명)

구분	초등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학생 수	예산	학생 수	예산	학생 수
서울	2,879,097	3,985	14,430,000	337,358	-	-
부산	1,809,600	2,928	7,456,586	299,894	1,012,133	8,131
대구	1,852,000	1,509	6,515,600	227,688	438,888	16,010
인천	2,672,056	2,058	4,519,000	124,365	271,016	6,384
광주	1,008,040	1,257	4,278,368	146,838	-	-
대전	3,340,000	3,128	3,997,500	127,571	-	-
울산	408,600	901	1,692,000	66,029	485,610	15,609
경기	6,708,460	8,551	16,410,000	496,578	5,616,000	125,660
강원	5,125,000	4,593	3,146,100	97,637	3,405,990	51,764
충북	2,700,000	3,664	40,52,100	109,708	4,540,670	53,655
충남	3,640,000	6,147	5,468,000	210,141	8,243,000	121,813
전북	3,480,000	4,475	5,992,892	228,459	8,696,526	49,689
전남	2,277,600	3,365	4,674,900	128,179	12,026,160	77,672
경북	2,420,000	3,646	9,397,110	414,095	8,920,698	100,557
경남	4,120,000	3,856	7,673,400	215,857	7,525,824	104,547
제주	298,000	575	1,129,500	33,612	1,148,200	12,872
계	44,738,453	54,638	100,833,056	3,264,009	62,330,715	744,363

주 1.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2008년도 예산이며, 학생 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10월에 조사한 통계자료의 참여인원임.

2. 서울, 광주, 대전은 농산어촌 지원사업 해당 지역 없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2)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대한 지원, 보육비 부담 경감, 잠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보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희망학교 및 기존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수요자의 부담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2008년 말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참여학생은 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일부 수강료만을 부담하는 경우,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로 나뉜다. 일부 부담하는 학생은 월평균 18,738원의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31,307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2008년도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은 [표 10]과 같다.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총 2,962개교이며, 일반 가정환경과 같이 보육 프로그램 전용으로 개조한 리모델링 교실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수는 2,749개이며, 기존 유허 교실을 활용하는 학급 수는 585개이다.

또한, 초등보육교실 운영 시간은 2008년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후 4시~5시 사이에 종료하는 경우가 51.1%, 오후 5시~6시 사이에 종료하는 경우가 24.9%, 오후 6시~7시 사이에 종료하는 경우가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 초등보육교실을 운영하는 학급 중 오후 6시 이전에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83.1%이다.

6)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2008. 12.

[표 10]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2008년도)

(단위: 개)

시도	보육 교실 운영 초등 학교 수	운영 학급 수									
		전용 교실	일반교실			특별교실			계		
			리모 텔링	기존 교실	계	리모 텔링	기존 교실	계	리모 텔링	기존 교실	계
서울	165	184	18	2	20	8	2	10	210	4	214
부산	158	123	32	3	35	22	3	25	177	6	183
대구	85	76	7	-	7	2	-	2	85	-	85
인천	108	107	3	-	3	1	-	1	111	-	111
광주	82	82	-	1	1	1	-	1	83	1	84
대전	135	141	13	5	18	6	3	9	160	8	168
울산	69	42	8	10	18	3	7	10	53	17	70
경기	426	420	15	-	15	30	-	30	465	-	465
강원	326	172	78	41	119	21	26	47	271	67	338
충북	195	149	28	10	38	11	11	22	188	21	209
충남	375	147	98	76	174	21	51	72	266	127	393
전북	208	78	62	134	196	18	26	44	158	160	318
전남	187	115	29	20	49	17	14	31	161	34	195
경북	163	81	31	73	104	6	19	25	118	92	210
경남	245	138	54	32	86	18	10	28	210	42	252
제주	35	27	4	4	8	2	2	4	33	6	39
계	2,962	2,082	480	411	891	187	174	361	2,749	585	3,334

주 1. 보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수는 1학급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2학급 이상 운영하더라도 1교로 산정함.

2. 운영 학급 수는 전체 보육 교실 학급 현황을 조사한 것임(학교 직영 학급 + 외부 위탁 운영 학급).

3. “교실 유형별”로 ‘전용교실’은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보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교실이며,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과학실, 미술실 등)은 정규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로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보육 교실로 활용하는 교실임.

4.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리모델링 교실’은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보육 전용 교실이며, ‘기존교실’은 리모델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교실임.

5.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표 11]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2008년도)

(단위: 학급 수, %)

종료 시간대	16시 이전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시 초과	계
학급 수	238	1,705	829	349	182	27	4	3,334
(비율)	(7.1)	(51.1)	(24.9)	(10.5)	(5.5)	(0.8)	(0.1)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재구성.

참여 학생 유형별로는 [표 12]와 같이 맞벌이 부부 자녀가 27,177명으로 전체 참여 학생 중 4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7,761명으로 1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생 유형별 참여 학생 수(2008년도)

(단위: 명, %)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부부 자녀	기타	계
학생 수	7,761	27,177	19,700	54,638
(비율)	(14.2)	(49.7)	(36.1)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재구성.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현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무상으로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년에 약 3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유수강권의 개념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불을 보

7) 1인당 연간 약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수강한 과목에 대해 지원됨.

증해주는 증서를 의미하는 ‘바우처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⁸⁾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자녀, 소년 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및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사가 추천한 학생 등의 순으로 지원된다.⁹⁾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2008년도 현황은 [표 13]와 같다. 2008년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금액은 총 986억 6,100만원이었으며, 지원인원은 총 326만 4,009명(연인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인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전체의 40.8%인 133만 2,902명이었으며, 전체 지원인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62.4%)였다.

[표 1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현황(2008년도)

(단위: 백만원, 명)

시·도	예산액	필수지원대상자(c)			필수지원 대상자 외 저소득층 학생(d)	총 지원인원 (e=c+d)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a)	기타 (b)	계 (c=a+b)		
서울	14,430	131,681	19,818	151,499	185,859	337,358
부산	7,062	131,574	29,007	160,581	139,313	299,894
대구	6,153	120,372	7,790	128,162	99,526	227,688
인천	4,745	53,294	3,962	57,256	67,109	124,365
광주	4,258	91,614	38,025	129,639	17,199	146,838
대전	3,976	60,306	2,418	62,724	64,847	127,571
울산	1,692	38,517	2,435	40,952	25,077	66,029
경기	16,410	153,202	16,130	169,332	327,246	496,578
강원	3,011	43,031	3,196	46,227	51,410	97,637
충북	3,066	51,381	5,420	56,801	52,907	109,708
충남	5,408	75,034	6,883	81,917	128,224	210,141

8)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2008. 12.

9)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세부 현황은 [부표 2] 참조(61쪽)

(단위: 백만원, 명)

시·도	예산액	필수지원대상자(c)			필수지원 대상자 외 저소득층 학생(d)	총 지원인원 (e=c+d)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a)	기타 (b)	계 (c=a+b)		
전북	5,880	116,617	7,172	123,789	104,670	228,459
전남	4,675	64,165	7,563	71,728	56,451	128,179
경북	9,397	107,434	16,537	123,971	290,124	414,095
경남	7,614	74,969	17,153	92,122	123,735	215,857
제주	883	19,711	2,007	21,718	11,894	33,612
계	98,661	1,332,902	185,516	1,518,418	1,745,591	3,264,009

주 1. 지원인원은 연인원 기준.

2.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현황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교육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방과후 추가적인 교육 혜택이 적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의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초·중·고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이며,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된다.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및 학생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참여 학교 및 학생 현황(2008년도)

(단위: 개교, 명, %)

구분	학교 현황			학생 현황		
	전체	운영	비율	전체	참여	비율
서울	-	-	-	-	-	-
부산	20	20	100	9,703	8,131	83.8
대구	46	46	100	25,055	16,010	63.9
인천	62	62	100	8,700	6,384	73.4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46	46	100	25,422	15,609	61.4
경기	601	601	100	246,329	125,660	51.0
강원	434	434	100	69,052	51,764	75.0
충북	288	288	100	72,495	53,655	74.0
충남	561	561	100	143,687	121,813	84.8
전북	459	459	100	59,310	49,689	83.8
전남	535	535	100	99,225	77,672	78.3
경북	653	653	100	134,302	100,557	74.9
경남	579	579	100	169,234	104,547	61.8
제주	94	94	100	20,955	12,872	61.4
계	4,378	4,378	100	1,083,469	744,363	68.7

주 1. 비율(%)=참여 학교·학생 수/전체 학교·학생 수×100

2. ‘전체’는 각 지역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교 및 학생 수를 나타냄.

3. ‘운영 학교 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1개 이상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이며, ‘참여 학생 수’는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임.

4. 서울, 광주, 대전은 농산어촌 지원사업 해당 지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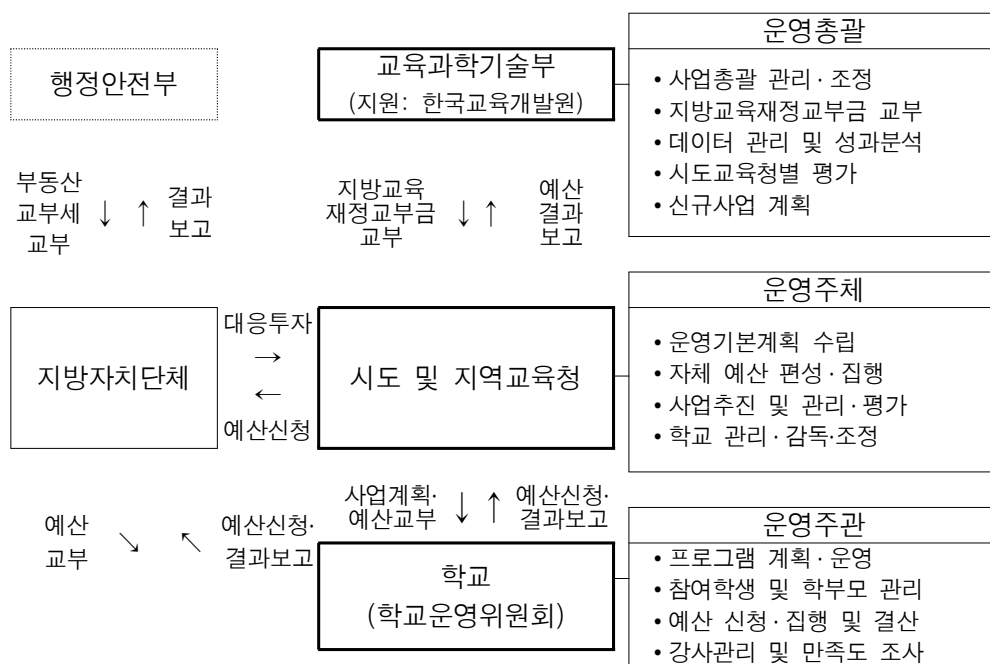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총 4,378개교이며, 참여한 학생은 해당지역 전체 학생의 68.7%인 74만 4,363명이다. 경기도가 참여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참여율은 5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의 사업 참여율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방과후학교사업의 추진체계

동 사업은 2008년에 지방으로 이양되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개별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방과후학교사업 추진체계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총괄조정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부금 및 자체 예산 등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초등보육 프로그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교육청에 배분한다. 지역

교육청은 단위학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는 실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 및 강사 관리,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설치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교육청과 함께 참여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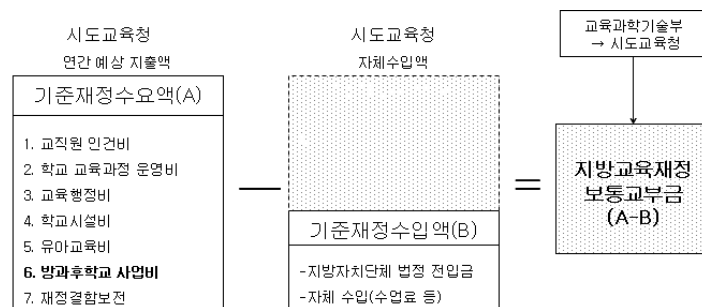
4. 방과후학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

가. 재정지원 방식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시군 대응투자금으로 구성되어 지방비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재정보통교부금¹⁰⁾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시도교육청 예산이다.

- 10)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한 해 동안 초·중·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지출액(기준재정수요액)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수입액(기준재정수입액) 간의 차이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임. 방과후학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산정 원리 개괄>



[표 15] 방과후학교사업 재정지원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재원 유형		국비	지방비				총계
		교과부 일반회계	시도교육청 편성 예산	지방교육 재정특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부동산 교부세	대응투자	
예산	'08	821	242,946	14,910	28,188	46,889	333,754
	'09	821	262,106	19,543	(미확정)	43,383	-
집행절차		교과부 → 국립 학교, 한국 교육 개발원	교과부 → 시도 교육청 → 지역 교육청 → 단위 학교		행안부 → 기초자치 단체 → 지역 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	기초자치 단체 → 지역 교육청 → 단위 학교	
지원내용		국립 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학교 성과 분석 연구용역	농산어촌 지원, 자 유수강권 지원 초등 보육 프로 그램 지원	당해연도 특정과제 수행	초등보육 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	

주: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2008년에는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방과후 학교 연구시범학교 지원비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에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엄마표 멘토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비, 방과후학교 누적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편성되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회계(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국립학교에 대한 자유수강권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관련 연구비뿐이며, 시도교육청 편성 사업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농산어촌 지원사업, 초등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 구축 경비로 구성된다.¹¹⁾

- 11) 2008년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분 교부율이 증가(19.4% → 20%)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부금 증가분이 방과후학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08. 2)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방과후학교 주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부동산교부세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나뉜다. 지방교부세는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재원이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균형재원)의 교부기준을 개편하여 마련된 재원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20%는 지역 교육 항목으로 신설되었고, 이중 4%가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지수’로 설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 초등보육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시도교육청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사업예산과 해당 시·군의 대응투자금으로 농산어촌 지원사업 예산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협조가 동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나. 시도교육청별 재정투입 현황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에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이외에도 [표 15]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등의 재원도 일부 포함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의 70%이상(2008년도 기준)을 차지하는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학교사업의 예산·결산 현황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사업의 재정투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1) 시도교육청별 예산·결산 현황

2007년부터 2009년간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사업 예산·결산 현황은 [표 16]과 같다. 방과후학교사업 재원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총 2,621억 6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3억 4,100만원으로 가장 예산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237억 5,000만원, 충청남도 216억 4,500만원, 서울시 216억

1,100만원, 경상북도 215억 5,3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정한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한 기준 재정수요액과 매우 유사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방과후학교사업 지역별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구분	예산	결산	기준재정 수요액	예산	결산	기준재정 수요액	예산
서울	10,331	9,844	18,528	24,725	24,570	21,984	21,611
부산	4,379	4,379	14,052	13,856	13,856	16,101	9,834
대구	3,677	2,869	9,779	9,526	9,446	12,027	11,988
인천	3,325	3,318	8,174	8,114	8,037	10,153	10,505
광주	2,791	2,755	7,399	6,102	6,059	9,471	9,059
대전	2,492	2,384	7,257	8,203	8,090	10,326	6,973
울산	2,622	2,577	2,847	4,254	4,249	4,457	6,019
경기	19,016	18,621	27,885	35,281	35,215	34,085	44,341
강원	4,392	4,372	14,185	14,874	14,151	18,037	16,236
충북	5,574	5,224	11,222	14,541	13,645	12,407	14,364
충남	2,779	2,778	17,151	18,301	18,301	20,975	21,645
전북	3,318	3,125	19,135	20,156	19,997	21,013	23,750
전남	1,759	1,759	18,981	19,695	19,462	20,094	19,585
경북	4,463	4,452	19,721	21,206	21,205	20,284	21,553
경남	6,820	6,489	19,319	19,860	19,579	20,648	19,645
제주	1,828	1,796	-	4,252	3,954	-	4,998
총계	79,566	76,742	215,635	242,946	239,816	252,062	262,106

주: 제주도의 경우 일괄배분(1.53%)되는 보통교부금에서 방과후학교사업비를 자체 확보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재정리.

방과후학교사업 예산 항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목은 방과후학교의 주요 사업인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2)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정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게 된다.¹²⁾ 2008년과 2009년도 방과후학교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은 [표 17]과 같다.

2008년도에는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연구시범학교 지원사업에 총 149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인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지원비, 방과후학교 비교과 누적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총 195억 4,300만원이 교부되었다.

2009년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과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사업,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들이다.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¹³⁾은 학부모 중에서 방과후학교 전담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엄마품 멘토링 사업은 학부모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멘토로 선정하고 방과후 학습 지도·보육 및 인성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⁴⁾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 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센터당 연간 1~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13) 2009년부터 2010년간(2년간) 총 4,000명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할 계획임 (2009년 예산 120억원, 특별교부금).

14)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총 52억 9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전국에 480개 팀(팀당 5명 내외, 약 2,400명의 학부모)을 운영할 계획이며, 멘토 활동비는 1회당 3~5만원 내외로 계획되어 있음.

[표 17] 방과후학교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초등보육 교실환경 개선 지원	방과후학교 연구 시범학교	합계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방과후학교 자원센터 지원	방과후학교 누적관리 시스템구축	합계
서울	150	34	184	1,194	329	0		1,523
부산	700	20	720	603	329	500	249	1681
대구	-	18	18	435	329	0		764
인천	110	21	131	462	359	300		1,121
광주	110	21	131	288	329	300		917
대전	1,350	10	1,360	282	329	100		711
울산	220	12	232	240	329	0		569
경기	-	21	21	2,259	329	0		2,588
강원	530	20	550	744	329	0		1,073
충북	160	17	177	528	329	200		1,057
충남	4,840	21	4,861	888	329	400		1,617
전북	2,510	19	2,529	867	329	100		1,296
전남	510	16	526	936	329	0		1,265
경북	2,150	19	2,169	1,026	329	100		1,455
경남	1,130	22	1,152	1,029	329	0		1,358
제주	140	9	149	219	329	0		548
계	14,610	300	14,910	11,781	4,965	2,000	249	19,54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재정리.

Ⅲ. 평가 및 정책 제언

1. 사업계획 단계 평가 및 정책 제언

가. 방과후학교사업의 법제화

방과후학교사업은 전국적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교육사업으로 교육복지 증진 및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2008년도 10월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99.9%의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52.8%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며,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 정규교육기능 보완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인 바,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¹⁵⁾ 또한 사업의 법제화는 지역별 사업수요에 대응한 적정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일관되게 공급되고, 교육청과 학교의 사업담당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¹⁶⁾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 11월 현재 국회에서는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안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안 등 2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각 안의 구체적 내용은 [표 18]과 같다.

15) 현재 동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음. 방과후학교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는 17대 국회에서도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검토가 장기화되다가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률안이 폐기된 바 있음.

16) 방과후학교사업과 유사한 타 부처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방과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표 18]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26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발의연월일	2008.11.28	2009.2.13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 수강자들이 교육비를 부담케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국가·지자체의 사업 재정지원, 저소득층 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교육감의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교직원 지원 노력을 규정 마.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규정	가.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 학생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케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국가·지자체의 사업 재정지원, 저소득층 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근거 규정 라. 교육감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마.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두 안은 모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에게 방과후학교 운영권, 수강료 징수권을 부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토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방과후학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나. 방과후학교사업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방과후학교사업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단위사업별로 재원 구조가 상이하다.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이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금으로 구성된다.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경우 2008년 이전부터 운영하던 교실 운영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며, 2008년에 신규로 설치된 보육교실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충당되어 동일 사업 내에서도 재원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19] 단위사업별 재정지원 방식

단위사업명	재정지원 방식
자유수강권 지원	시도교육청 예산
농산어촌 지원	시도교육청 예산 + 시군 대응투자
초등보육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예산(기존 보육교실에 대한 운영비) + 시군구 부동산교부세 잔액 지원(신설 보육교실 지원)

주 1. 시도교육청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함.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부동산교부세 잔액의 20%를 지역교육부문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이중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지원 4%).

자료: 국무총리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2008. 7.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재원이 상이하고 지원 방식이 복잡하여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년 안정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업예산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초등보육 프로그램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부동산교부세 지원 저조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재원은 앞서 [표 19]에서 보았듯이 시도교육청 예산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다. 이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2007년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정하고 남은 재원(균형재원)의 교부기준에 ‘방과후 초등보육·교육 지원 지수’가 포함되었다. 즉, 균형재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자치단체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관련 규모(5%) 등이 반영되는데,¹⁷⁾ 이중 지역교육 항목의 4%가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지수’로 규정된 것이다.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재원 중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잔액’은 이와 같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중 위 지수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가리킨다.

[표 20]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각 지역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잔액 중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지원 지수에 의해 산정된 교부세 부분^A과 실제 2008년도에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투자한 교부세^B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역별로 교부된 보육·교육 지원 지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중 실제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투자된 금액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각각 보육·교육지원 교부세의 84.0%, 73.0%, 65.8%를 해당 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부산, 대전, 울산은 보육·교육 지원 교부세를 전혀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725억원 중 38.9%인 278억원만이 해당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1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표 20] 부동산교부세 중 보육·교육지원 교부세 교부 및 투자 현황(2008년도)

(단위: 백만원, %)

지역	보육·교육지원 교부세(A)	실제 투자된 교부세(B)	B/A(%)	2008 재정자립도
서울	4,076	644	15.8	88.3
부산	2,825	-	0.0	60.5
대구	3,283	1,240	37.8	59.5
인천	2,991	1,080	36.1	71.0
광주	1,695	148	8.7	52.6
대전	1,356	-	0.0	66.4
울산	452	-	0.0	69.9
경기	7,162	6,014	84.0	76.3
강원	5,596	2,049	36.6	28.2
충북	5,048	3,683	73.0	34.2
충남	5,594	3,679	65.8	37.8
전북	5,931	670	11.3	22.6
전남	9,634	2,783	28.9	21.4
경북	9,245	3,258	35.2	28.7
경남	6,350	2,610	41.1	39.4
제주	1,306	330	25.3	26.3
총계	72,545	27,858	38.9	53.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A)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B)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지역별로 재정 지원 비율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동산교부세를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지원할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

18) 행정안전부 및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며, 방과후 보육·교육 지수는 부동산교부세 잔액을 교부하는 기준일 뿐 교부세 집행을 구속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임.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은 「지방교부세법」 관련 법령 개정 시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방과후 보육·교육 지수가 포함된 것은 그만큼의 방과후 보육 지원 사업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

거나,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교부세가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정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예산 확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지자체 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 세부 현황을 지역별로 조사하고, 전국적인 국가재정 투입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¹⁹⁾ 특히 사업수요 대비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사업비가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규모의 방과후 보육교육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각 지역별 초등보육 서비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측정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별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연동한 재정적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각 지역은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에 노력하게 될 것이며,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사업개선 노력을 촉진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가 전제된 것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상 부동산교부세의 집행 용도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보육·교육 지원 지수만큼의 부동산교부세를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19)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투자는 동 사업 예산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지자체 전입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기 운영하던 초등보육교실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에는 시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둘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보육 프로그램 재원 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청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지원에 의존하는 이원화된 재원구조는 동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매년 대폭 축소되고 있어,²⁰⁾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를 점검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²¹⁾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대응투자 비율 저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시도교육청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구성된다.²²⁾ 이러한 재정구조로 인해 지역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시·군이 매년 얼마만큼 대응투자에 협조적인지에 일정 부분 의존하게 된다.²³⁾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는 첫째,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조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각 지역별 교육청 편성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액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국적으로 농산어촌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아, 대응투자 저조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불안정성, 대응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과 같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20)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규모: 2007년 1조 8천억원, 2008년 3조 1천억원, 2009년 1조 4천억원, 2010년 1조(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0)

21) 부동산교부세 축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가 부동산교부세를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하기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22)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과 시군의 대응투자를 50:50의 비율로 확보할 것을 규정한 이래로 동 사업은 위와 같이 2가지 재원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음.

23)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사업 담당자들은 매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에 대응투자 협조를 요청·설득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실제 농산어촌 지원사업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은 상황임.

둘째, 재정여건 및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지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응투자하는 예산 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농산어촌과 같이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으나, 지역의 재정여건 상 대응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적정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은 2008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응투자한 금액과 교육청 예산 대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 2008년도 지역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2008년도 예산 현황					
	교육청 편성 사업예산		시군 대응투자		합계	
서울	-	-	-	-	-	-
부산	362	(35.8)	650	(64.2)	1,012	(100.0)
대구	220	(50.0)	220	(50.0)	440	(100.0)
인천	582	(40.1)	870	(59.9)	1,452	(100.0)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486	(61.8)	300	(38.2)	786	(100.0)
경기	5,393	(49.0)	5,607	(51.0)	11,000	(100.0)
강원	3,403	(43.3)	4,448	(56.7)	7,851	(100.0)
충북	4,332	(52.6)	3,904	(47.4)	8,236	(100.0)
충남	9,385	(47.5)	10,392	(52.5)	19,777	(100.0)
전북	6,229	(79.1)	1,618	(20.9)	7,847	(100.0)
전남	12,016	(69.9)	5,178	(30.1)	17,194	(100.0)
경북	11,264	(64.1)	6,316	(35.9)	17,580	(100.0)
경남	7,373	(58.5)	5,240	(41.5)	12,613	(100.0)
제주	1,148	(85.2)	200	(14.8)	1,348	(100.0)
총계	43,198	(57.1)	32,478	(42.9)	75,676	(100.0)

주: 서울, 광주, 대전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해당 지역 없음.

자료: 각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동 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비율은 최소 14.8%에서 최대 64.2%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최대 49.4%p에 이르렀다.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대응투자한 지역은 부산(64.2%), 인천(59.9%), 강원(56.7%), 충남(52.5%), 경기(51.0%) 순이었으며, 전체 사업예산의 50%미만을 대응투자한 지역은 제주(14.8%), 전북(20.9%), 전남(30.1%), 경북(35.9%), 울산(38.2%), 경남(41.5%), 충북(47.4%)이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전국의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도농복합시(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의 경우 지자체 대응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22]참조).²⁴⁾

이와 같이 사업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이 매년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지원 받도록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대응투자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투자비율이 저조하다면, 적정 규모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여력이 없는 지역은 사업예산이 더욱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사업의지가 있는 지역은 사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4) 참고로 [부표 3]과 [부표 4]의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도농복합시의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63, 64쪽).

[표 22] 2008년도 전라북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초자치 단체명	2008년도 예산 현황						2008년도 재정자립도
	교육청 편성 사업예산		시군 대응투자		합계		
전주시	100	(100.0)	0	(0.0)	100	(100.0)	34.6
군산시	450	(100.0)	0	(0.0)	450	(100.0)	24.3
익산시	617	(100.0)	0	(0.0)	617	(100.0)	24.2
정읍시	493	(100.0)	0	(0.0)	493	(100.0)	13.6
남원시	378	(100.0)	0	(0.0)	378	(100.0)	12.0
김제시	489	(100.0)	0	(0.0)	489	(100.0)	12.7
완주군	783	(76.0)	247	(24.0)	1,029	(100.0)	26.8
진안군	351	(78.4)	97	(21.6)	448	(100.0)	11.2
무주군	323	(81.1)	76	(18.9)	399	(100.0)	13.5
장수군	328	(83.4)	65	(16.6)	393	(100.0)	10.7
임실군	357	(64.1)	200	(35.9)	558	(100.0)	12.2
순창군	365	(60.9)	234	(39.1)	599	(100.0)	8.7
고창군	601	(62.7)	357	(37.3)	958	(100.0)	8.8
부안군	594	(63.4)	343	(36.6)	936	(100.0)	11.7
합계	6,229	(79.1)	1,618	(20.9)	7,848	(100.0)	(평균)16.1

주: 2008년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제출자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셋째, 지자체가 방과후학교사업에 지원하는 대응투자금은 배부시기가 교육청의 사업예산과 상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의 지역교육청 및 학교들은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이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사업예산을 교부하는 시기는 매년 3월이나, 지자체 대응투자금 교부시기는 5월, 7월, 9월 등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교부되어 사업 수행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각 지역별 사업수요 대비 대응

투자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수요 대비 대응투자가 저조한 지역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같은 학교의 고유한 교육 영역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방과후학교사업의 국가재정 투입 규모와 같은 재정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진단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예산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사업의 총괄 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로 지원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재원 창구가 단일화되어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연도말 결산 시에도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금이 학교의 학기에 관계없이 부정기적으로 교부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합리화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는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방과후학교사업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다.²⁵⁾ 따라서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사업비 규모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 방과후학교사업 기준재정수요액 및 교육청 예산 편성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기준재정수요액	215,635	252,062
교육청 예산액	242,946	262,1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재정리(지역별 세부 현황은 [부표 1] 참고(60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표 23]과 같이 방과후학교 사업비 산정기준을 3가지 주요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그리고 초중등학교 보육지원사업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23] 방과후학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농산어촌 지원	학급 수	$\Sigma \text{학급 수} \times \text{전년도 학급당 평균 방과후학교 지원액}$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등의 수	$\text{수급자 등의 수} \times 1\text{명당 연간수강료} \times 1.2$
	다. 초중등학교 보육지원	학급 수	$\text{전년도 운영 학급 수} \times \text{학급당 연간운영비}$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에 학급당 평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액을 곱하여 구해진다. 이때, 학급당 평균 지원액은 전년도 농산어촌 지원사업 예산 투입액을 학급 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줄어든 데 따라 학급당 평균 지원액은 [표 24]와 같이 2008년 360만 4천원에서 2009년 261만 4천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현황

측정항목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공식	산정결과	
		2008	2009
농산어촌 지원	$\Sigma \text{학급 수} \times \text{전년도 학급당 평균 방과후학교 지원액}$	52,780,580천원	38,177,470천원
	- 학급 수 : 읍·면 지역 소재 공립·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급 수	14,645개	14,605개
	- 학급당 평균 지원액 : (시도 교육청 예산 + 지자체 예산)/학급 수	3,604천원	2,614천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교육청이 확보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차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 반영되는 재정구조로 인해, 2009년도 해당 학급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사업의 중심재원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약 528억원에서 약 38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즉, 교육청이 농산어촌 지원사업 예산을 당해연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학급당 평균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사업수요와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재정여건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 전년도 사업예산 규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²⁶⁾

26)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사업비의 축소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줄어들 경우, 초등보육교실 지원단가([표 23])를 조정하여 교부금 총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농산어촌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각 사업은 고유의 사업수요가 있으며, 사업예산은 그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초등보육 프로그램 기준재정수요액을 변경하여 부족한 농산어촌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임.

2. 사업집행 평가 및 정책 제언

가. 초등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후학교사업 중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출산 장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0월 기준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나타낸 [표 25]를 보면, 토요휴업일, 학교 재량 휴업일과 방학 중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휴업일의 경우 전체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의 82.8%, 학교 재량 휴업일은 75.1%, 방학 중에는 31.2%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현황

(단위: 학급 수)

구분	토요휴업일			학교 재량 휴업일			방학 중		
	운영	미운영	계	운영	미운영	계	운영	미운영	계
계	575	2,759	3,334	831	2,503	3,334	2,295	1,039	3,334
(비율)	(17.2)	(82.8)	(100.0)	(24.9)	(75.1)	(100.0)	(68.8)	(31.2)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또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 및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17시 사이에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학급 수 비중이 전체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의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7~18시에 종료하는 학급은 24.9%, 18~19시에 종료하는 학급은 5.5%로 나타났다.

다. 즉, 18시 이전에 보육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학급 비중이 전체의 83.1%였으며, 19시 이후까지 보육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6.4%에 그쳤다.

[표 26]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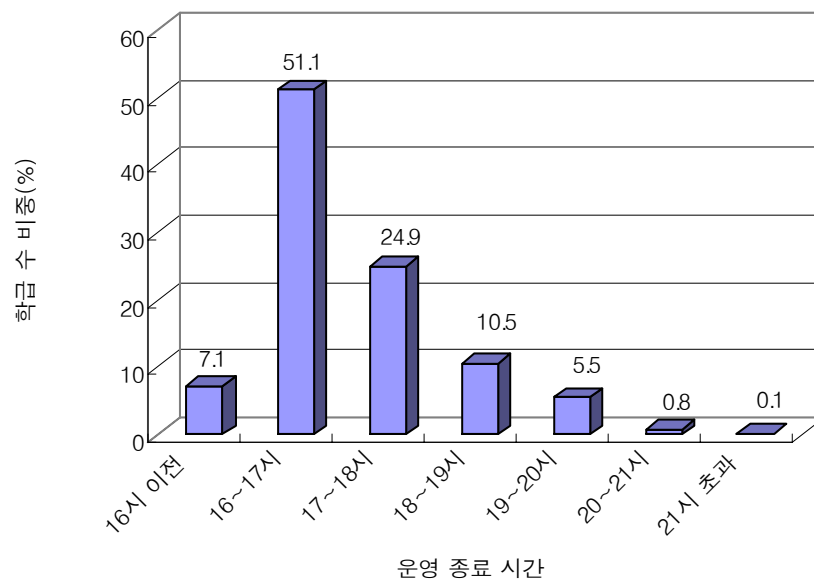
(단위: 학급 수, %)

구분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							계
	16시 이전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시 초과	
계	238	1,705	829	349	182	27	4	3,334
(비율)	(7.1)	(51.1)	(24.9)	(10.5)	(5.5)	(0.8)	(0.1)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그림 4]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현황



위와 같이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의 83.1% 이상이 18시 이전에 운영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18시 전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보육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는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 사업(신규)에 40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 밤 9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전국에 2,000개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교실수의 확대, 운영 종료 시간의 연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현재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짧은 운영시간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동 사업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교실 설치비(리모델링 비용 등)만을 지원하며, 신설된 교실에 대한 운영비는 시도교육청이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바, 교육과학기술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귀가 지원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비중이 높아 교육 복지 증진 차원에서 방과후학교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은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해 개별 학교의 규모가 작고, 학교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교통수단이 적절히 구비되지 않아 외부 강사 또는 적정한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를 지역 여건에 맞게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고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공동으로 운

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지역 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거점학교에 모여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강사 확보 및 적정 학생 수 확보를 통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점학교로 이동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종료 후 귀가 거리가 길어져 거점학교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안전한 귀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표 27]과 같은 몇몇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종료 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 등을 도입하였으나, 대부분의 농산어촌에서는 귀가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²⁷⁾

[표 27]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생 귀가지원 사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교육청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간에 연계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학교 교육활동 차량을 지원하거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울산시교육청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학교 중 17시 이후에 수업이 종료하는 거점학교(6개교)에 예산을 지원,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택시를 계약하여 학생들의 귀가를 지원하고 있음 |
|--|

자료: 시도교육청 2009년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및 담당자 협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거점학교로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지역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중 학생 귀가지원 차량 수요·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사업 수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27)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담당자 협의 및 한국교육개발원(2008. 12)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임.

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사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보육 사업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과 같이 두 부처가 추진 중인 사업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개별적인 사업이지만, 학부모 및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업대상 및 범위가 유사하며,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대체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방과후학교는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과정 이후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또는 교과 관련 학습을 하거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이다.

[표 28] 방과후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사업 현황

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방과후학교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내용	보호·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 사회 연계 등 통합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급, 급식 등 종합서비스	보육시설에서 방과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초등 보육, 특기적성 강좌, 교과 강좌
사업대상	저소득층·맞벌이 부부·취약계층 자녀(18세미만 아동·청소년)	기초생보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 (초4~중2, 제한없음)	초1~6학년 (저학년 위주)	초·중·고 학생
운영시간	8시간 이상	5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학교별·강좌별 운영 시간 상이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2009. 6. 및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 참고.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에 안전한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사업들이 연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

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는 데 비용이 증가하며, 프로그램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시설, 공간 또는 강사 등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시설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사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단계에서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추진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청소년 시설 등으로 복잡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²⁸⁾

이러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유사사업간 연계·조정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시범사업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신규사업으로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다([표 29] 참조). 그러나 두 부처간에 유사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연계·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의도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 유사한 아동·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간 연계 및 전달체계 효율화의 필요성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2007년도 결산분석), 국무총리실의 방과후학교 실태조사(2008년),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사업 심층평가(2009년) 등 정부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표 29]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부처별 사업 현황

사업명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지원 (2009년 신규)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 (2010년 신규)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현황	20억원 (2009년 특교)	1억 800만원 ¹⁾ (일반회계, 2010년도 정부예산안)
지원대상	전국 10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2009년 8월 선정 완료)	6개 지역(대도시2, 중소도시 2, 농산 어촌 2)의 6개 기관
사업기간	2009년 9월부터 1년간(12개월)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
지원금액	센터당 1억~3억원 운영비 지원	1개소당 월 30만원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 하여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산 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등 유사사업간 통합 수행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 업 수행

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도 신규사업인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은 교육과학
기술부와의 예산 매칭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이 통과되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경 특별교부금을 통해 방과후학교지원
센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표 30]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청이 추진하는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의 통합·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을 추진하는 센터 10개소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
(2009년 6월)하여 1년간 1억~3억원의 운영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²⁹⁾

올해 선정된 지원센터 중 충청남도 공주교육청과 공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
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가
족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통합 노력이 시도된 점이
특징적이다.

29)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선정 현황은 [부표 7]을 참조(67쪽)

[표 30]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 개요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조정 -교육청의 교육 전문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풍부한 시설과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 예산 통합 및 협력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준 제고 -관련사업의 시너지 효과 도모 및 예산절감
선정 사례: 충남공주교육청 · 공주시	-센터의 구성 및 역할 : 공주교육청·공주시 공동 주관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도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협력방안 강구, 학교간 학교급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지원 등 -유관기관 연계 운영 계획 : 공주시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꿈이 있는 도덕지역아동센터, 탄천지역아동센터, 제일 좋은 지역아동센터, 금강지역 아동센터 등 지역내 방과후 보육·교육 관련 기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단위학교 방과후 학교를 지원합니다!’, 2009. 8. 18 및 충남공주교육청·공주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사업계획.

다음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요구자료에서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등) 및 교과부(방과후 초등보육 교실)로 부처별·기관별로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신규사업으로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1억 800만원의 예산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사업은 6개 아동·청소년 시설³⁰⁾을 선정하고 10개월간 시설당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³¹⁾

각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별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업간 연계·

30) 청소년아카데미 1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계획

31)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동 사업 예산의 일정 부분을 대응받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동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실질적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음.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두 사업 모두 10개 방과후학교지원 센터와 6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 개별적으로 추진하여서는 일부 기관에 대한 단기적인 재정지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 예산은 유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없이 계상되었으며, 국회에 예산안 제출 당시 까지도 방과후 보육·교육사업간 통합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방과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유사한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조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방과후학교 참여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방과후학교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과과정 교육 및 학생 관리 이외에 증가하는 교원의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참여학생이 증가할수록 학교 시설 및 강사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관리에 대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은 증대되게 때문이다.³²⁾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방과후학교사업 도입 초기부터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에 방과후학교 보직교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책임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보직교사는 연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운영, 강사 섭외 및 관리, 학교 내·외의 학습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고 평가 또는 승진 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2) 방과후학교사업을 처음 계획 시 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한 시범연구학교 조사결과(2006. 4)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추가 업무량이 단위 학교 기준으로 월 평균 122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그러나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평가자료³³⁾를 분석한 결과, [표 31]과 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보직교사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보직교사가 비교적 활성화된 지역(도입 비율 70% 이상)은 광주시, 강원도, 충청남도,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등이었다. 반면 보직교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도입 비율 35% 이하)은 경상북도, 울산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제주도 등이었다.

[표 31] 방과후학교 보직교사 배치학교 비율

(단위: 개교, 명, %)

지역	학교 수	보직교사 배치 학교 수	배치 비율
서울	927	764	82.4
부산	387	158	40.8
대구	249	44	17.7
인천	282	220	78.0
광주	169	169	100.0
대전	158	125	79.1
울산	105	29	27.6
경기	971	706	72.7
강원	116	116	100.0
충북	136	31	22.8
충남	151	126	83.4
전북	185	19	10.3
전남	151	70	46.4
경북	235	79	33.6
경남	430	96	22.3
제주	50	6	12.0
합계	4,652	2,752	58.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재정리.

33) 방과후학교 활성화 부문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99.9%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책임지는 교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 보직교사가 전국적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현황 분석 및 홍보, 운영 활성화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3. 성과관리 평가 및 정책 제언

가. 국가수준의 방과후학교사업 성과분석시스템 구축

방과후학교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생활공감정책,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기초학력미달학생 해소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복지 관련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의 중장기적 진행 추이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연차계획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핵심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시스템이나 성과분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주체별 정보관리 업무 현황을 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지역교육청과 학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현황 정보를 관리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매년 사업현황 자료를 취합(반기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로 지역별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취합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시도교육청의 사업현황 데이터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취합·정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하는 구조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관리 구조는 일선 사업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1차적인 자료 수집에만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되어 정작 중요한 성과분석 및 평가는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규교육만으로도 업무부담이 높은 학교 및 지역교육청 현장에서 입력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성과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에 동 사업이 지방이양된 이후 사업 현황 관련 정기적인 통계 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한 방과후학교사업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지, 또한 지역 및 소득수준별로 방과후학교사업의 교육복지 증진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등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⁴⁾ 또한 시도교육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여 심층적인 성과분석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³⁵⁾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방과후학교사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입력되어 중앙으로 취합될 수 있는 국가수준의 방과후학교사업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성과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이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요사업별, 학생 성적분포별로 당초 목표한 학교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증진,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을 촉진하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확산, 전국적인 사업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과 그렇지 못한 세부사업을 분석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법 정비 시 이와 같은 데이터관리시스템

34)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정기적으로 방과후학교사업과 사교육비 경감과의 관계 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성과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축적되어 사업내용에 환류되지 않고 있음.

35)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격차 감소, 사교육비 경감 등과 같은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방과후학교사업의 양적지표(참여인원 증가율, 강좌 수 증가율 등) 관련 자료 취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음.

및 성과분석·평가시스템 구축의 근거 및 재원조달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거나 중장기적인 성과가 중요한 프로그램 등은 사업추진 이전에 이미 성과평가 방법 및 평가주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³⁶⁾ 또한 평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970년 미 의회에 의해 제정된 공공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에서 'Set-Aside Authority'를 규정하고 있다. Set-Aside 규정은 보건 및 사회복지 주무부처(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HS)의 장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최고 1%까지를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조항이다.³⁷⁾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사업도 중장기적인 사업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사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가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과 같이 안정적인 평가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³⁸⁾

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강화

정부는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 시 환류하기 위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지표는 정부 서비스의 품질, 비용 대비 효과성, 고객 만족도 등 주요한 성과정보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주체는 누구인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투입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표 32]

-
- 36)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패널자료 구축에 관한 타당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7. 12
- 37)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현재 330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전체 사업예산 6,130억달러 가운데 8억 3,100만달러(0.14%)를 평가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 38)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2억원 가량을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여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동 사업의 성과분석 예산이 5천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와 같다. 2008년도에는 성과지표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및 만족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는 일반회계 예산 8억원으로 수행하는 국립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전국적인 학생 참여율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사업 성과지표 현황

연도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2008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정기적인 현황조사	51%
		방과후학교 만족 학생 비율		64%
2009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국립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만족도 1%당 투입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국립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만족도	4,615원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정기적인 현황조사	54%
2010	방과후학교 운영	국립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만족도 1%당 투입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국립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만족도	4,050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2010년도 성과계획서.

다음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개별적인 성과지표를 수립하지 않고 대신에 [표 33]과 같이 매년 수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지표는 방과후학교 강좌 증가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참여율, 초등보육 교실 비율, 자유수강권 지원인원 증가율 등 투입 및 과정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증진,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이 각 지역 수준에서의 집행 실적 관리로만 그치고 중장기적인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방과후학교사업 평가기준 현황

(단위: 점, %)

평가기준	배점(비중)
■전년대비 방과후학교 강좌 증가율	1.8 (5)
■농산어촌 초·중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도만 해당)	3.6 (10)
■초등보육 교실 운영 활성화	5.4 (15)
■자유수강권 지원인원 증가율 및 지원학생 1인당 지원액	5.4 (15)
■방과후학교 지원 기반 구축 노력	7.2 (20)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창의적 노력 및 그 성과	12.6 (35)
합 계	36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방과후학교사업의 정책목표인 학교 정규교육기능 보완,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감소, 사교육비 경감과 같은 효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만으로는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재정 및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 개선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별 대표성 있는 국가 수준의 결과지표를 조속히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사업의 주요사업인 초등보육 프로그램, 농산어촌 지원사업, 자유수강권 지원사업별 성과지표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정규교육 보완,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 정책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경우 보육교실 운영 학급 수 및 운영시간, 참여 학생 비율,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등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교통수단 제공 여부, 학생 참여 비율, 외부 우수 강사 참여율,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비율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사업의 정책목표인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 보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 사교육비 경감 효과, 학력 및 특기적성 신장 효과, 아동·청소년 비행행동 감소 효과 등과 관련한 결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성과 추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방과후학교사업은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기능 보완,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지원, 교육청·지자체의 활성화 노력 그리고 개별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력에 힘입어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99.9%의 초·중·고교에서 전체 학생의 52.8%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국가 재정은 2007년에 1,985억원, 2008년에 3,337억원이었으며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평가는 방과후학교사업이 사교육비 경감이나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업계획, 사업집행, 성과관리의 각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방과후학교사업 추진근거의 명확성,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 사업 집행의 효율성,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사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정규교육 보완,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과 같은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 사업은 매년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각종 교육복지 및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부대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실제 국민의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지, 방과후학교사업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잠재능력 개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성과분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사업 성과관리는 참여학생 수, 학생 참여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예산 확보 규모 등과 같은 투입 및 산출지표 관리에만 머물고 있어, 당초 목표한 사업성

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목표인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간·계층간 교육복지 증진, 정규교육기능 보완 효과 등에 대한 각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표별 추이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엄밀한 성과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사업은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국단위의 사업이며, 다양한 관련주체가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법령 상 재원조달 방안, 사업추진 방식, 관련 주체간 업무분담,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합리적으로 규정된다면, 방과후학교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과후학교사업의 복잡한 재정지원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복잡한 재정지원체제로 인하여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나 방식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사업의 수준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주요 재원이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는 바, 지역별로 부동산교부세 지원 정도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해 매년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바, 향후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초등보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에 연동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과 시군의 대응투자로 마련되고 있어, 재원규모가 시군이 매년 얼마만큼 대응투자에 협조적인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이 대응투자하는 예산 비율이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농산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대응투자금은 학교의 학기에 맞춰 교부되는 시도교육청 예산과는 달리 매년 비정기적으로 교부되고 있어, 일선에서 담당자가 방과후학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사업 수요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당해연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연도 학급당 평균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교과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이 현실적인 수요와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전년도 사업비 확보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중요한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83% 이상이 18시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학기간, 학교별 재량휴업일, 토요일휴업일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적어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민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별 보육수요 및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과후학교 사업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 방식 및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규모가 작고, 학교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사업이 수행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이후 학교가 학생의 안전 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거점학교로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사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추진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방과후 보육·교육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업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사전 협의 없이 방과후 보육·교육지원사업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시범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육·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방과후학교사업의 수요가 높은 곳에 적절한 수준의 재원이 조달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사업성과와 관련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되고, 사교육비 절감, 정규교육 보완, 교육격차 해소 등 사업목표별 성과달성도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각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방과후학교사업 관련 제출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 6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 1. 2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성과계획서」, 2009. 9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10
- 국무총리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2008. 7
-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Ⅲ」, 2008. 7
- 금재덕,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재정지원체계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20권 제4호, 2008.12.
- 박소영,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008, Vol. 2, No. 1, pp. 391~4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세부 실천계획, 2009. 6.18
- 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09. 3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패널자료 구축에 관한 타당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7. 12
- 한국개발연구원,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2009. 6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2007. 3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평가 지표 개발 연구」, 2008. 3.
- 한국교육개발원, 「2007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2007.12
-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2008.12
- 한국재정학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 비교 연구」, 2009. 2(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 보고서)
-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09.10

[부표 1] 방과후학교사업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액 및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09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예산	기준재정수요액	예산
서울	18,528	24,725	21,984	21,611
부산	14,052	13,856	16,101	9,834
대구	9,779	9,526	12,027	11,988
인천	8,174	8,114	10,153	10,505
광주	7,399	6,102	9,471	9,059
대전	7,257	8,203	10,326	6,973
울산	2,847	4,254	4,457	6,019
경기	27,885	35,281	34,085	44,341
강원	14,185	14,874	18,037	16,236
충북	11,222	14,541	12,407	14,364
충남	17,151	18,301	20,975	21,645
전북	19,135	20,156	21,013	23,750
전남	18,981	19,695	20,094	19,585
경북	19,721	21,206	20,284	21,553
경남	19,319	19,860	20,648	19,645
제주	-	4,252	-	4,998
총계	215,635	242,946	252,062	262,106

주: 제주도의 경우 일괄배분(1.53%)되는 보통교부금에서 방과후학교사업비를 자체 확보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재정리.

[부표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지역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서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 2순위 :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 3순위 :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부산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하되, 소년소녀가장·시설수용학생·보훈대상자 자녀·북한이탈학생, 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대구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자녀,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 자녀 ○ 2순위 : 기타 저소득층 자녀(차상위계층 상당 자녀, 최저 생계비의 120%) ○ 3순위 : 학교장/교사 추천
인천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순으로 지원
광주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
대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수급자로 통보된 학생(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복지시설수용학생 등) ○ 학비 및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 담임추천 학생
울산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2순위 : 소년소녀가장,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북한이탈학생 ○ 3순위 : 차상위계층중 급식지원자 및 담임 추천자
경기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등 ○ 기타 한부모 자녀, 셋째 이하의 자녀 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강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2순위 :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 3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자녀 및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 4순위 : 기타저소득층으로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
충북	○ 필수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중 희망자 ○ 학교장 추천 :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한 학생
충남	○ 1군(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2군(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자녀, 새터민자녀, 차상위계층자녀) ○ 기타(일반 저소득층 자녀 및 1세대 셋째 이상 자녀 중 저소득층 자녀)

지역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전북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 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학생 우선 지원 ○ 조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담임추천자)
전남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 소년소녀가장, 시설 수용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학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 지원
경북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시설 수용학생,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경남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 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등과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
제주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하되, 소년소녀가장·시설수용학생·보훈 대상자 자녀·새터민자녀 및 차상위계층 등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부표 3] 경상남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초자치 단체명	2008년 예산 현황						2008년도 재정자립도
	교육청 편성 사업예산		시군 대응투자액		합계		
창원시	339	(41.5)	478	(58.5)	817	(100.0)	55.2
마산시	377	(79.0)	100	(21.0)	477	(100.0)	41.1
진주시	378	(49.9)	380	(50.1)	758	(100.0)	30.3
통영시	353	(97.2)	10	(2.8)	363	(100.0)	20.4
사천시	467	(61.5)	293	(38.5)	761	(100.0)	19.4
김해시	442	(94.6)	25	(5.4)	467	(100.0)	37.1
밀양시	398	(96.1)	16	(3.9)	414	(100.0)	22.3
거제시	417	(56.1)	326	(43.9)	743	(100.0)	40.4
양산시	375	(96.9)	12	(3.1)	388	(100.0)	46.4
의령군	343	(40.8)	499	(59.2)	842	(100.0)	14.2
함안군	385	(79.5)	99	(20.5)	484	(100.0)	20.2
창녕군	410	(53.1)	362	(46.9)	773	(100.0)	15.7
고성군	363	(24.8)	1,098	(75.2)	1,460	(100.0)	13.7
남해군	403	(52.0)	372	(48.0)	775	(100.0)	12.0
하동군	406	(83.9)	78	(16.1)	484	(100.0)	15.1
산청군	361	(50.3)	357	(49.7)	718	(100.0)	9.8
함양군	368	(81.1)	86	(18.9)	454	(100.0)	10.5
거창군	396	(67.8)	188	(32.2)	584	(100.0)	13.6
합천군	390	(45.9)	460	(54.1)	850	(100.0)	13.2
합계	7,373	(58.5)	5,240	(41.5)	12,613	(100.0)	23.7

주 1. 2008년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2. 도농복합시: 창원, 마산,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자료: 경상남도교육청 제출자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부표 4] 경기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초자치 단체명	2008년 예산 현황						2008년도 재정자립도
	교육청 편성 사업예산		시군 대응투자액		합계		
평택시	367	(40.5)	539	(59.5)	906	(100.0)	53.6
용인시	366	(100.0)	0	(0.0)	366	(100.0)	67.2
파주시	402	(66.8)	200	(33.2)	602	(100.0)	49.4
이천시	382	(40.6)	560	(59.4)	942	(100.0)	40.7
안성시	317	(67.9)	150	(32.1)	467	(100.0)	35.9
김포시	349	(53.8)	300	(46.2)	649	(100.0)	51.3
화성시	401	(39.6)	610	(60.4)	1,011	(100.0)	63.8
광주시	332	(38.1)	540	(61.9)	872	(100.0)	58.8
남양주시	447	(69.1)	200	(30.9)	647	(100.0)	40.6
양주시	307	(43.4)	400	(56.6)	707	(100.0)	47.8
포천시	398	(44.8)	490	(55.2)	888	(100.0)	33.1
여주군	356	(44.2)	450	(55.8)	806	(100.0)	42.4
연천군	290	(45.3)	350	(54.7)	640	(100.0)	28.0
가평군	333	(44.5)	416	(55.5)	748	(100.0)	25.8
양평군	346	(46.3)	402	(53.7)	748	(100.0)	23.9
합계	5,393	(49.0)	5,607	(51.0)	11,000	(100.0)	44.2

주 1. 2008년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2. 도농복합시 : 평택, 남양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자료: 경기도교육청 제출자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부표 5]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현황

(단위: 학급 수, %)

시도	토요휴업일			학교 재량 휴업일			방학 중		
	운영	미운영	계	운영	미운영	계	운영	미운영	계
서울	25	189	214	46	168	214	212	2	214
부산	4	179	183	124	59	183	182	1	183
대구	6	79	85	3	82	85	61	24	85
인천	65	46	111	93	18	111	111	-	111
광주	4	80	84	24	60	84	73	11	84
대전	22	146	168	24	144	168	101	67	168
울산	49	21	70	48	22	70	68	2	70
경기	62	403	465	167	298	465	465	-	465
강원	6	332	338	11	327	338	111	227	338
충북	7	202	209	22	187	209	164	45	209
충남	211	182	393	64	329	393	204	189	393
전북	69	249	318	71	247	318	165	153	318
전남	1	194	195	6	189	195	73	122	195
경북	11	199	210	26	184	210	112	98	210
경남	33	219	252	98	154	252	169	83	252
제주	-	39	39	4	35	39	24	15	39
계	575	2,759	3,334	831	2,503	3,334	2,295	1,039	3,334
(비율)	(17.2)	(82.8)	(100.0)	(24.9)	(75.1)	(100.0)	(68.8)	(31.2)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부표 6]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 현황

(단위: 학급 수, %)

시도	운영 종료 시간대별 학급 수							계
	16시 이전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시 초과	
서울	-	6	92	79	35	2	-	214
부산	-	141	23	15	4	-	-	183
대구	-	57	21	6	1	-	-	85
인천	-	-	23	76	11	1	-	111
광주	2	9	61	12	-	-	-	84
대전	6	132	28	2	-	-	-	168
울산	-	9	54	6	1	-	-	70
경기	-	107	225	99	7	23	4	465
강원	46	239	17		36			338
충북	11	158	31	9	-	-		209
충남	-	240	50	21	82	-	-	393
전북	98	153	57	7	3	-	-	318
전남	16	166	11	2				195
경북	44	116	45	5	-	-	-	210
경남	14	135	90	10	2	1	-	252
제주	1	37	1	-	-	-	-	39
계	238	1,705	829	349	182	27	4	3,334
(비율)	(7.1)	(51.1)	(24.9)	(10.5)	(5.5)	(0.8)	(0.1)	(100.0)

주: 2008년 10월 기준 자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부표 7]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대상 선정 현황

구분	구분	지역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액
A등급	인천	강화교육청	강화군청	3억원
	부산	남부교육청	남구청	
	광주	서부교육청	남구청	
B등급	충남	공주교육청	공주시청	2억원
	"	금산교육청	금산군청	
	부산	서부교육청	서구청	
	충북	청원교육청	청원군청	
C등급	대전	동부교육청	동구청	1억원
	경북	문경교육청	문경시청	
	전북	정읍교육청	정읍시청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단위학교 방과후 학교를 지원합니다!’, 2009. 8. 18

연구 및 참여한

□ 총 괄

박용주(사업평가국장)

□ 기획·조정

김일권(사회사업평가팀장)

□ 집 필

박애린(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 편 집

이하영(사무보조원)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제 목	집 필 진	발간일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평가	이환성	2.16
2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 평가	허가형	3. 9
3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은경	3.31
4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이환성·이현정	4. 6
5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평가	김상우	4. 8
6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여차민	4.13
7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박홍엽	4.20
8	해외인턴사업 평가	정유진·박애린	4.29
9	민간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안태훈	5. 8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윤성식	5.20
1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 -재정운용 평가	최미희외 2인	7. 7
1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I -시설별 평가	김상우외 3인	7. 7
13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박홍엽	7.30
14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이환성·이현정	810
15	2004~2008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이은경	9.17
16	U-Korea 선도사업 평가	여차민	9.17
17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정부사업 성과정보의 신뢰성 부족 유형 분석	김일권외 12인	9.17
18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	안태훈	9.25
19	대형연구개발사업 평가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윤성식	9.28

사업평가 09-20

방과후학교사업 평가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 간 일	2009년 11월 4일
편 집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발 행 인	신해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문인쇄 TEL 02·2272·755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TEL 02·788·468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51-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